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3 선고 2018가합402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2582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3 선고 2018가합402693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승봉철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4, 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1974. 11.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B은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A이 2014. 10.경 원고 B의 직원인 D과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에서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는 그 즈음부터 원고 A과 D의 관계를 의심하였는데, 2015. 11. 4.경 원고 A의 사무실에서 원고 A과 이에 대하여 다투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에 원고 A은 2015. 11. 9.경 피고와 사이에 서로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오피스텔을 구해 거처를 옮기면서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합 의 서

1. 갑(원고 A,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아래 재산의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소유를 인정하며 처분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아래 재산 중 G 점포의 대출은 갑이 2016. 12. 31.까지 상환하며 월세 수익금은 본 합의일자 이후 을에게 지급한다.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의 전세금은 을이 승계한다.
3. 갑은 을의 별거를 인정한다.
4. 을은 서류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5. 을은 아래 재산 이외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갑이 아래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인감 및 주민등록 제공 등 적극 협조한다.
6. 을은 이와 같은 조치를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갑의 과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
7. 갑과 을은 서로의 독립된 생활을 인정하며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서로 요구하지 않는다.

재산

1. 성남시 분당구 G상가 I
2.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J호
3. 경기도 광주시 K 주택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다.

마. 피고는 강원도 양양군 L 답 1,333㎡ 중 1/2 지분(이하 ‘양양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4. M, N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여 2017.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용인시 수지구 O아파트 P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의 제1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85㎡ 건물(이하 ‘용인시 건물’이라 한다)을 2017. 7. 6. R에게 4억 원에 매도하여 2017.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8320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6.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으로부터 각 명의신탁받은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처분한 양양군 토지와 용인시 건물 역시 원고 A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인데 피고가 이를 처분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A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양양군 토지와 용인시 건물은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원고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물건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주부로서 일정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얻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양양군 토지, 용인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양양군 토지, 용인시 건물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김재연, 판사 임세준

[별지]

부동산 목록

1. 광주시 S 임야 913㎡
2. 광주시 T 임야1983㎡ 496/1983 지분
3. 광주시 U 도로 3229㎡ 613483.2/16674556 지분
4. 광주시 V 창고용지 977㎡
5. 광주시 V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W

위치상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2층, 창고시설

1층 364.00㎡

2층 364.00㎡

지1층 49.40㎡

끝.